

1. 개정이유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체계적인 데이터 형태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4.26. 일부개정, 2023.4.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기준,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에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법 제21조의3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로 정함

나.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의무 등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저장·관리 및 임의 조작·변경 금지(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제출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의 활용을 위해 운행기록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제출 의무(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소방청장)

라.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활용 등을 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
· 분석(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마. 본 규칙(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안 제10조의6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제10조의3(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저장·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의4(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제출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활용)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

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3(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저장·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u>
<u><신 설></u>	<u>제10조의4(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제출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신 설>

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활용)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6(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